교원겸소속규정 4-2-9

규정번호 4-2-9
제정일자 2008.4.1
최근개정 2026.7.20
개정차수 3차 개정
관리부서 교무입학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(이하 “우리대학”라 한다)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의 겸소속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교원겸소속이라 함은 우리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원소속학과 이외에 교내 타 학과의 교육 및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.

제3조(겸소속 사유)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리대학 교원을 겸소속으로 발령할 수 있다.

1. 우리대학의 운영상 강의·연구 과제 등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대학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제4조(겸소속 발령절차) ① 겸소속 교원의 발령은 교무처장이 학과장과 협의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.

② 겸소속 교원은 [별첨1]의 겸소속 동의서를 교무팀에 제출한다.

제5조(겸소속 발령기간) 겸소속 발령기간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환경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26.7.20.)

제6조(권리 및 의무) ① 겸소속 교원은 원소속학과에서 직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원소속학과와 겸소속학과 간에 상호 합의한 경우 별도의 직무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겸소속 교원은 겸소속기간 중 발표되는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원소속학과와 겸소속학과를 명기할 수 있다.

③ 겸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업적평가는 원소속학과에서 실시한다.

제7조(시행세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31> <생략>

<32> 교원겸소속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, 제3조3호, 4조①, 제7조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<33> - <102> <생략>

부 칙(학칙) <2010.3.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18> <생략>

<19> 교원겸소속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②항의 “교무과”를 각각 “교무팀”으로 하고, [별표1]의 교원 겸소속 동의서 양식 중 “계열”을 각각 “학부”로 한다.

<20> - <49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)

<별표 1>

교원 겸소속 동의서

소　　속 :

직　　위 :

성　　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상기인을　　학부　　학부(과,전공)로의 교내 겸소속에 동의합니다.

20　년　　월　　일

위 본 인　　(인)

학 과 장　　(인)

교 무 처 장　귀하